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11일

가조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희	박 *희 1917-01-12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	직권말소 2021-03-11